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4/ 9 통권 172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4): 학습과 개선
-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공동 수주받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와 면세금액 구분함 (p.13)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이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업무>

개념 구분	의무, 절차, 이행사항, 불이행가산세 등 불이익
1. 공익법인세무확인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 용여부를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2인)의 세무확인받아야 함
대상규모	(자산규모 5억 이상~100억 미만, 당년출연재산 3억 이상)
출연자 등 제외	출연자(1% 이상) 설립자, 임직원은 안됨
출연자 특수관계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자(친족, 직계비속,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등) 제외
출연자 등 외주	출연자 등이 경영하는 회사의 소송대리·회계감사·세무대리·고문계약자 제외
공익법인과 독립성 유지	채권채무: 해당 공익법인과 채권·채무 관계자 제외
이해관계자	공익법인과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의 공정수행이 어려운 경우(기장·세무대리자 등)
동일법인소속자	출연자, 출연자 등 외부용역자, 기장·세무대리인 등과 같은 법인 소속자 등
불이행가산세	세무확인서 미제출시 (당년 수입 + 출연재산액) × 7/10,000 ≥ 100만원
2.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업무
해당규모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수입·당년출연가액 50억원 이상)
불이행시	외부감사 불이행시 (당년수입 + 출연재산액) × 7/10,000 가산세 부과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세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22호 / 주간 15호

2025. 4. 9.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의무	표지
CEO의 경영산책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4): 학습과 개선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지자체 포상금의 회계처리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관련하여 -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회계처리 문의 - 대손충당금 관련 질의	5 6
눈에맞는 절세미인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회사 복지혜택 유형별 과세 여부 - 연금계좌 소득공제	9 10
직장인Survival	꾸준히 성장하는 직장인의 5가지 특징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76, 2024.07.23) -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2017, 2024.08.22)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공동 수주받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와 면세금액 구분함	12
세무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	15 27 30 35 41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4

# 기업 거버넌스의 이해(4): 학습과 개선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근 흠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관련하여 대주주 MBK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MBK가 흠플러스 인수 후 지난 10년간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자본회수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흠 플러스의 경영악화 원인 중의 하나로 MBK의 폐쇄적 경영을 지적하고 있다. 계획과 일상 운영을 위한 수립된 기업의 거버넌스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조직 경영의 환경과 목표 및 전략 등은 빈번히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장래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거버넌스 구조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과 개선은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발생한다. 즉 전사적 차원, 특정 사업본부나 부문, 프로젝트,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있고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CEO는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거버넌스의 학습과 개선은 기업의 목적과 전략, 조직구조, 실행 모두에 적용된다.

Applicable at all levels, i.g.:

- Enterprise
- department
- unit
- group
- project
-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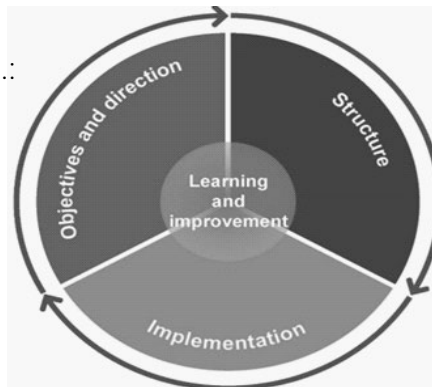


그림 1. 거버넌스의 학습과 개선 ( Learning and improvement Guidelines for governance, 1st Edition 2021, IIA Norway, pp. 20-23.

거버넌스의 학습과 개선은 실행 단계에 대한 평가나 데이터 및 결과 분석을 원하는 개발 및 목표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모든 수준에서 개선 조치를 식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인 관리와 독립된 평가와 일상적인 운영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의 통제 및 객관적인 보증은 조직 내 학습과 개선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 (1)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모든 주요 활동에 대해 수립되어 목표와 차이나 원치 않는 사건이나 추세를 발견하고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기본 활동이 수행되는 방식과 통제 활동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 약점과 오류 또는 개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모니터링 및 개선"이라고 정의한다.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목표한 결과의 차이(gap), 원치 않는 추세 및 개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또한 리스크 영역 평가, 적절한 수준의 후속 조치 및 완화 조치의 적시 이행을 위한 기초가 된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주요 활동 및 리스크 노출 영역이 차이(gap) 보고, 리스크 관리 또는 기타 프로세스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활동에서 발생하는 편차와 원치 않는 경향을 평가한다. 완화해야 할 리스크가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임이 독립된 특정 분야(예 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 담당)에 기능에 할당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 (2) 독립된 통제 기능(예: 내부회계관리제도팀)

라인과 독립된 통제 기능은 기업의 거버넌스 및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여러 산업 및 부문에서 라인 관리와 독립적인 제어 기능의 수립에 대한 공식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이를 2차 기능(2ND line)이라고 한다. 2차 기능은 운영 활동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기업의 통제 및 자문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기업의 운영부문 등과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고 업무 수행에 중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 기능은 거버넌스 및 의사 결정 원칙의 개발과 거버넌스 및 통제를 위한 프레임워크 관리에 중요한 공헌자가 될 수 있다. 통제 활동에 대한 조언, 지침 및 개선 제안을 제공하고 원하는 개발에서 벗어나는 차이를 식별하여 기업이 이에 집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통제기능은 집행 권한을 가진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 (3) 객관적인 인증 ( 예 : 내부감사)

객관적인 인증과 조연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평가와 결정을 내리는 정보가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T시스템, 통제 및 정보가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조직( 예 : 내부감사)에서 확인 검토되면 이사회는 보다 편안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감사는 제3자 기능( 3RD line) 기능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증 및 컨설팅 기능의 구축은 많은 산업 및 부문의 당국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시 내부감사전문가를 아웃소싱하여 활용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일 수 있다.

### (4) 지속적인 학습 및 개선

개선 및 학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오류나 원치 않는 사고 및 기업 활동의 개선 필요성은 내부 통제체계를 통해 감지되고 수정되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만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정보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른 부문 사람들과 필요한 변화를 실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 기업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구축하는 능력은 향후 발전과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어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반드시 내일을 위한 최선은 아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와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 지자체 포상금의 회계처리

**Q** 지자체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포상금을 기타수익으로 기록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지자체로부터 귀사(법인)이 포상금을 받았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포상금을 받은 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관련하여

**Q** 2025년1월1일부터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하여 할인 금액이 연240만원 이상시 근로소득으로 규정한다는 개정안을 확인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종업원복지혜택으로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는 할인이 아닌 무료이므로 무료숙박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회사 종업원 내부 시상식에서 받은 당사 무료 투숙권에대하여 종업원이 무료로 투숙한 경우 / 직원이 업무상 투숙하는 경우도 무료로 투숙하는데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시가보다 할인받아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할인금액 중 연240만원 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아직 구체적 범위 등이 나와있지 않지만 할인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시가와외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한도내에서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회계처리 문의

**Q** 특수관계법인인 해외업체에 견본품(샘플)을 3백만원 정도 직추출하고 '무상거래'로 면장 신고하였습니다.

국내거래일경우에 견본품 무상거래는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해외 특수관계법인도 무상거래, 견본품 지급일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하지않아도 상관없는지요?

**A**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손충당금 관련 질의

**Q** 대손충당금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작년 A업체의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대손확정 X)

2. 다음 달부터 대손 잡은 채권에 대한 회수 시작 예정

3. 이 상태에서 A업체에 대해 추가 채권 발생

추가 채권은 대손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대손 잡은 채권 회수가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동일한가요?

**A** 추가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상담실 백종훈 차장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마감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시·군내에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의무자가 되는데,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모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액이 산출되면 여기에 추가되어 과세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①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내국법인(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외국법인,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①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②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 ③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 ④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 내에 각각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집단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0.9%~2.4%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세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0.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7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800만원+3천억원 초과금액의 2.4%

###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 산출세액을 사업장별 종업원 수비용과 건축물 연면적 등 이익기여도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내의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서 일괄 납부한다.

사업장별 안분 계산 산식

$$\text{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times \left[ \frac{\text{해당시·군 안 종업원수} + \text{해당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times \text{관할자치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할 때,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며, 이때의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 등으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도 포함한다. 또한 안분 계산시의 건축물 연면적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며,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연면적이 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회사 복지혜택 유형별 과세 여부

구분	비과세	과세
식대	20만원 이하 현금 식대	현금 식대 20만원 초과분, 복지포인트는 전액 과세
사택 제공	일반 직원 및 소액주주 임원	출자 임원
현금 주거비		전액 과세
무상 및 저리 주택자금대여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이외 근로자 이자상당액
업무용 차량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때	차량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원받을 때

### 화

####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보험 종류	이자소득 비과세
일시납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납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이후부터 사망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 연금계좌 소득공제

연봉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최대 600만원까지	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		13.2%	79만2000원

연봉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까지	16.5%	148만5000원
5500만원 초과		13.2%	118만8000원



## 세계 각국 '디지털세' 추진 현황

캐나다	글로벌 매출 8억달러 이상 SNS·디지털 광고 기업	국내 매출 3%
프랑스	글로벌 매출 7억달러 이상 디지털 기업	국내 매출 3%
인도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	국내 광고수익 6%
한국	자체 추진 없고 OECD, G20 포괄협의체 참여·타결 추진	



## 꾸준히 성장하는 직장인의 5가지 특징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는 직장인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이기보다는 ‘성장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다. 꾸준히 발전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를 살펴보자.

### 1. 루틴이 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루틴을 통해 자신만의 학습 습관을 만든다. 출근 전 30분 책 읽기, 점심시간 10분 어학 공부 등 일상의 틈을 활용해 꾸준함을 유지한다.

### 2. 작은 목표를 설정한다

큰 꿈도 좋지만, 그들은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한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OO 자격증 기초 강의 수강 완료”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실천도 따른다는 걸 안다.

### 3. 피드백을 환영한다

성장형 사람들은 비판이나 조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 4. 멘토를 찾는다

경험 많은 선배나 분야의 롤모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관찰한다.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이 곧 성장의 촉매가 된다.

### 5. ‘기록’으로 자신을 관리한다

하루를 돌아보고 배운 점을 기록하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추적한다. 성장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작은 실천의 반복이 결국 커다란 성장을 만든다. 꾸준한 자기계발은 경쟁력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공동 수주받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와 면세금액 구분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76, 2024.07.23

### 질 의

- 물류업자,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한 경우 물류 인쇄업자가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16> 적용

서면법규재산-3968, 2024.09.06

### 질 의

- ('16년 12월) 경기도 1주택 취득(C기관 근무)
- ('17년 12월) 세종 소재 주택 특별공급 당첨
- ('21년 2월) 세종 신규주택 취득(잔금청산)
- ('21년 7월) C기관 일부 부서 이전(경기도 > 세종)
- A주택 양도 예정  
양도일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음

### 질의

- 공공기관 이전 전에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및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 155<16> 적용 여부

### 회 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 해당함

사전법규재산-131, 2024.06.20

### 질 의

- 2013년 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총 15억원을 지불

함(토지 7억, 건물 6.2억, 시설권리금\* 1.8억)

\* 소득법 94①(4)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  
함을 전제

- 2022.7월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  
(특약사항 : 잔금청산 전에 어린이집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2023.3월  
양도함

#### 질의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  
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  
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  
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  
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

#### [질의내용]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경  
우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  
경한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어린이집 취득 시 지불  
한 시설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안) 필요경비 미해당

(2안) 필요경비 해당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 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 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임

서면법규재산-2017, 2024.08.22

#### 질의

- 거주자 甲은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A회  
사 주식에 투자
- A회사는 2023.12.15. 개최된 특별주주총회에서 주  
식에 대한 주식병합을 승인받아 100:1 액면병합을  
실행하였음  
- 기존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 1주를 교부하며,  
병합시 신주 기준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단주")은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거주자 甲은 2023.12.22. 위 주식병합의 결과 기존  
주식 70주가 출고되었으며 신주 수령 없이 단주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하였음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  
(액면병합)의 결과 소유한 기존주식을 반납하고 신  
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 수만을 줄이  
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전제

####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회사의 납입  
자본금의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  
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한 경우, 거주자  
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  
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248만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4월 25일 확정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8만 명 등 총 248만 명의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른 납부마감 시한은 이달 25일이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 국한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부분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천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 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취약 업종 법인은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도움자료도 받을 수 있어 과세자들을 위한 편의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평이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를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간 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5월 10일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인 제도 활용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산불 피해 기업, 3개월 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해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2025. 4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 입법예고 기간

- 상증령 : '25.3.21 ~ 4.16(26일)
-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 : '25.3.21 ~ 4.30(40일)

참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범위 구체화(조특령 §6)

< 법 개정내용(조특법 §7) >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 ○ 일반 서적 출판업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2.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조특령 §9⑮)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내국인의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인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심의사항 확대 ○ (좌 동)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

<개정이유>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규정 (조특령 §21④)

### < 법 개정내용(조특법 §24)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

구 분(%)	기본			추가*	⇒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연구개발시설 포함)	1	5	10	10		일반 (연구개발시설 포함) 신성장·원천기술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15		25	
							20		3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li> <li>* 신성장·원천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li> </ul>
--	--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 4.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규정 (조특령 § 21④)

##### < 법 개정내용(조특법 §24) >

<p>□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p> <p>*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중견 20% 중소 30%</p>
--

현행	개정안
<신설>	<p>□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시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li> <li>○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li> </ul>

<개정이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 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조특령 § 21⑤ · ⑩ · ⑪ · ⑯)

현행	개정안		
<신설>	<p>□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li> <li>○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사용비율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경우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frac{\text{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text{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gt; \frac{50}{100}</math> </td> </tr> </table> <p>ii)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경우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frac{\text{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text{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gt; \frac{50}{100}</math> </td> </tr> </table> </div>	$\frac{\text{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text{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 \frac{50}{100}$	$\frac{\text{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text{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 \frac{50}{100}$
$\frac{\text{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text{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 \frac{50}{100}$			
$\frac{\text{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text{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 \frac{5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납부</li> <li style="padding-left: 20px;">* (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공제세액 등 - 일반시설 공제세액</li> <li>○ (자료제출)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li> <li style="padding-left: 20px;">*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li> </ul>
--	---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 6.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조특령 §26의6)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li> <li style="padding-left: 20px;">*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li> <li>○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li> </ul>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li> <li>②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li> </ul>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령 § 26의8· § 27)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8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li> <li style="padding-left: 20px;">*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공제(법§29의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법§30)</li> <li>** (현행)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8세 이하)</li> <li style="padding-left: 20px;">(개정)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가족돌봄</li> </ul>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퇴직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결혼·②임신·③출산·④육아·⑤자녀교육</li> <li style="padding-left: 40px;">① 퇴직 1년 이내 혼인</li> <li style="padding-left: 40px;">② 퇴직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li> <li style="padding-left: 40px;">③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li> <li style="padding-left: 40px;">④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li> </ul>	<input type="checkbox"/> 퇴직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ul>

<p>⑤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장애인* 자녀 육아)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li> <li>○ (가족돌봄) 퇴직일 당시 고령·장애* 직계 존속 동거보양 * (고령) 70세 이상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li> </ul>
---	--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8.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구체화(조특령 § 54 신설)

<b>&lt; 법 개정내용(조특법 §58) &gt;</b>	
<input type="checkbox"/>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 * (~10만원) 100/110 (10만원~2,000만원) 15%<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규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 적용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9.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의 경영악화 요건 규정(조특령 § 80의3)

<b>&lt; 법 개정내용(조특법 §86의3) &gt;</b>	
<input type="checkbox"/>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 ○ 경영악화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임의해지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10.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령 § 104의30)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3) >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차액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10%를 최대 10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계산 방법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출자전환 당시 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등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전환 당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 차감</li> <li>※ 손금산입 대상 금액: [출자전환차액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 10% (최대 10개 사업연도 동안 손금산입 가능)</li> </ul> </li> <li>○ (합병·분할 시 승계)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법인이 손금산입 특례 승계 가능</li> <li>○ (사후관리) ①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②취득한 주식등 처분 시 익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출자전환 당시 장부가액 대비 장부가액 증가분만큼 익금산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 출자전환 시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사업연도까지 장부가액 증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li> </ul> </div> </li> <li>- ②취득한 주식등 처분 시: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만큼 익금산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손금산입 금액의 합계액 × (처분한 주식등 수/취득한 주식등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 신청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특례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li> </ul> </div> </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11.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 104의32 신설)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5) >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신설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범위 및 과세특례 신청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운영비용)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 제외)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 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운영비용에서 제외</li> </ul> </li> <li>○ (공통비용 안분)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공통되는 경우 안분하여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 안분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li> <li>- ①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울 경우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li> <li>- ② 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구분: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불가</li> </ul> </li> <li>○ (특례 신청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운영비용 명세서 및 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li> </ul>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1. 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사항 규정(상증령 §34의3)

##### < 법 개정내용(상증법 §45의5) >

-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li> </ul> </li> <li>②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증자</li> <li>③ (현물출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li> </ul>

<신 설>	<p>④ (주식전환) 전환사채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p> <p>⑤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p> <p>⑥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p> <p>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p> <p><input type="checkbox"/>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p> <p>○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 주주의 지분율</p>
-------	--

<개정이유> 특정법인과 거래 이익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구체화

## 2.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시 세부사항 규정 (상증령 §84)

### < 법 개정내용(상증법 §82) >

-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 제출대상, 자료의 내용, 제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투자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조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li> <li>「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li> <li>「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자료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li> <li>② 투자조합 조합원 출자지분 내역 및 변동내역</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li> </ul>

<개정이유> 투자조합 자료제출 의무 규정 구체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규정(국기령 § 65의5 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84의3 신설) >

-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지급 대상 및 한도,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부과·징수 및 승소 공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과·징수)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 유도 포함</li> </ul> </li> <li>② (승소)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액)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미적용</li> </ul> </li> <li>○ (지급한도) 인당 연간 2천만원</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2.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마련**

< 법 개정내용(국기법 §84의3 신설) >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규정(국기법 § 67의4 및 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과기준) ①의무 불이행기간 × ②1일당 부과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기간) 세무조사 기간* 중 의무 불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무조사 중단기간 포함</li> </ul> </li> <li>② (1일당 부과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 × (0.001 ~0.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평균수입금액별 부과비율 : ① 15억원 이하 : 2/1,000</li> <li>②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1,500</li> <li>③ 30억원 초과 : 1/1,000</li> </ul> </li> <li>- (예외) 평균수입금액 불분명시 500만원 이하</li> </ul> </li> </ul> □ (부과절차) 금액, 사유, 납부기한 등을 서면통지

<신 설>  (부과방법) 이행기한 도과시 매 30일 마다 부과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2)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기령 § 67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무조사의 목적·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li> <li>② 장부등을 고의로 미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li> <li>③ 기존 과태료 부과로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li> <li>④ 이행노력 등을 고려한 감경·면제 필요성</li> </ol> </li> <li>○ (구성)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과반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위원장(지방국세청장) 포함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 이내</li> <li>② 법률·회계·세무 관련 전문가 13명 이내</li> </ul> </li> <li>○ (임기) 2년 이내</li> <li>○ (공개 여부) 비공개 원칙(필요시 공개)</li> <li>○ (제척 및 회피요건) 관련 세무조사 참여, 부과 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등</li> </ul>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령】**

1.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합리화(소득령 § 2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기간) 10년 이상</li> <li>-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li> <li>변경시 변경일부터 10년 이상</li> <li style="padding-left: 20px;">&lt;추 가&gt;</li> </ul>	<input type="checkbox"/>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기간요건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 적용</li> <li>* ①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li> <li>②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li> <li>③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입한도) 월 150만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li> <li>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	--

<개정이유> 노후 연금수령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연금수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2.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른 조각투자상품 범위 추가(소득령 § 26의3)

현 행	개 정 안
<p>□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① + ②)</p> <p>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p> <p>*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②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큰 경우 등 제외)</p>	<p>□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추가(①-1 또는 ①-2 + ②)</p> <p>①-1 (좌 동)</p> <p>①-2 신탁업자가 단일한 자산을 신탁받아「자산 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50인 이상)된 것일 것</p> <p>② (좌 동)</p>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과세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3.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사후관리 요건 보완(소득령 § 40의2)

현 행	개 정 안
<p>□ 연금계좌 납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li> <li>○ 추가납입 가능 항목 (②·③ 합산 생애누적 1억원 한도)</li> <li>①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li> <li>②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 중 1명 60세 이상</li> <li>- 부부합산 1주택자</li> <li>-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li> <li>- 주택 양도일 6개월 내 납입</li> </ul> </li> </ul>	<p>□ 주택차액 납입 요건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① (좌 동)</li> <li>② (좌 동)</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주택 양도가액 &gt; 본인이 취득한 축소주택 취득가액</li> <li>㉓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li> </ul> <p><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 연금계좌 추가납입 사후관리* 요건</p> <p style="margin-left: 20px;">* 추가납입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입당시 대상 요건 미충족</li> <li>○ 납입 후 5년 내 본인이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lt; 연금계좌 납입액”</li> </ul> <p style="margin-left: 20px;">* (연금주택 양도가액) - (축소주택 취득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주택 양도가액 &gt;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 취득가액</li> <li>㉓ (좌 동)</li> </ul> <p><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납입 후 5년 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lt; 연금계좌 납입액”</li> </ul>
--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납입요건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후관리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주면세점규정】

#### 1.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 조정 (제주면세점규정 §5)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주류 별도 면세범위		<input type="checkbox"/> 병수 기준 삭제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용량 2리터 이하로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개정이유> 지정면세점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국세청, 2025. 4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4.30. → 7.31.)

## <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세정지원 사항 >

- ❶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 ▶ (재난피해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1만 개)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천 개)
  - ▶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 6천 개)
    -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❷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가능**
  - ▶ (적용대상)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 (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
  - ▶ (차감액)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자산상실비율(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
  - ▶ (신청방법)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제출
- ❸ **세액 분할납부 가능**
  - ▶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 가능



구분	내용
분할납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li> <li>• 납부할 세액 2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li> </ul>
분할납부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6. 2. 까지)</li> <li>•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6. 30. 까지)</li> </ul>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화)부터 오는 4월 30일(수)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text{안분율} = \left( \frac{\text{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1만여 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2천여 개)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1만 6천여 개)도 포함된다.

○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 재해손실세액 차감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차감한다.
    - \* 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
  -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2.)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30.)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면서,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며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 국세청, 2025. 4

- 국세청 (청장 강민수)은 3.31.(월)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습니다.
-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 부부간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받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양쪽에서 공제 받는 경우 등
-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 ❖ 민생경제를 돕기 위해 따뜻하게 감싸안은 세정 실천

-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백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합니다.
-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입니다.
  -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 24%)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34%)의 번거로움을 덜며
  - 2천9백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 간편하고 정확한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

#### ① 환급 대상 확인 ➡ 홈택스 접속

-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 화면에서 ❶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❷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❸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② 더 편리한 신청 ➡ 1분이면 OK!

-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



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신고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 ③ 수수료 부담 없는 안심 서비스

- 한편,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 ❖ 환급신청, 부당공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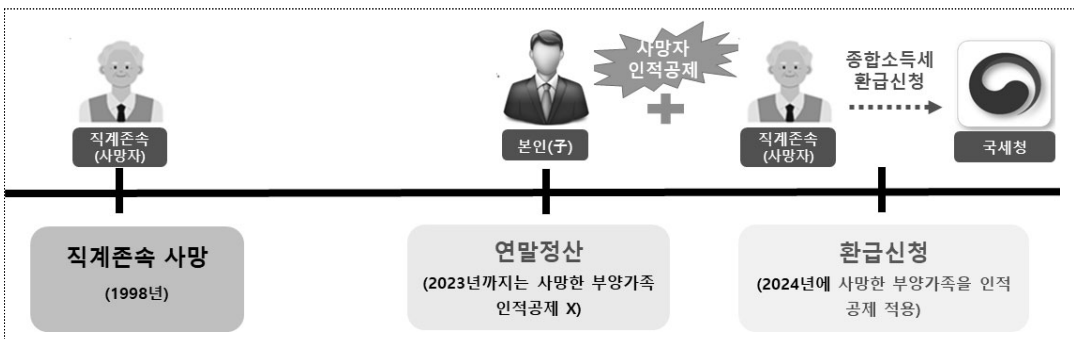
- 국세청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 향후에는 AI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아울러,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별 환급신청 방법 안내

- '20~24년 신고분 ('19~'23년 귀속)은 3.31.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신청 가능
  -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환급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후신고 서비스입니다.
    - 지금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최대 5년치('19년~'23년 귀속) 환급금은 3.31.(월)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PC 이용]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로그인(간편인증 등) ➡ 초기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바로가기' 클릭 ➡ ③환급금 확인·신청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은 본문 참조)
- '25년 신고분 ('24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신청 가능
  - '24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 신청 합니다.
    -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원클릭' 서비스 만큼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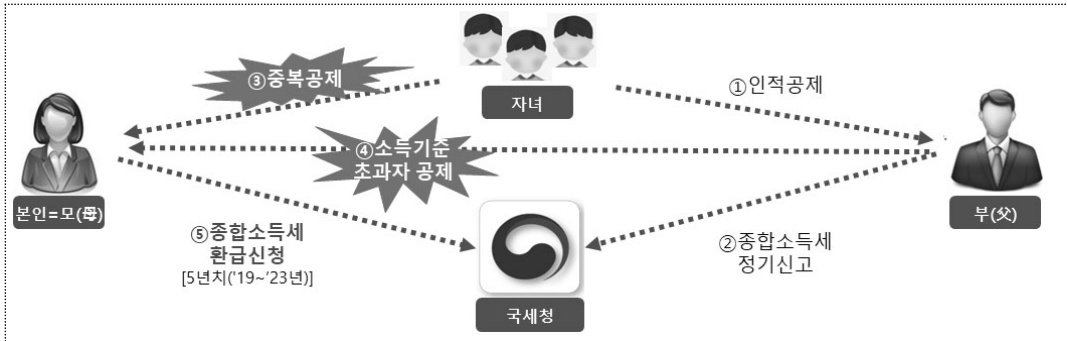
## 붙임 2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과다공제 사례

### 사례 1 26년 전 사망한 직계존속을 5년치('19~'23년) 인적공제하여 환급



- 근로소득자인 아들은 26년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을 그동안 공제하지 않다가 '24년에 5년치('19~'23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서 인적공제하여 소득세 350만 원 환급 받음

**사례 2** 자녀를 중복공제하고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여 환급



- 고소득 전문직인 남편이 소득세 정기신고하면서 자녀(3명)를 인적공제 하였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공제 및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여 5년치('19~23년) 소득세 250만 원 환급신청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28일(금)	3월 31일(월)	4월 1일(화)	4월 2일(수)	4월 3일(목)
미 달 러 (USD)	1466.80	1466.50	1470.60	1471.70	1467.80
일 본 엔 (JPY)	971.26	981.76	980.11	982.48	989.95
영 국 파 운 드 (GBP)	1899.14	1897.36	1900.02	1902.10	1911.74
캐 나 다 달 러 (CAD)	1025.05	1024.41	1021.89	1029.41	1029.31
홍 콩 달 러 (HKD)	188.63	188.53	189.03	189.13	188.57
위 안 화 (CNH)	201.63	201.68	202.68	202.08	201.43
유 로 화 (EUR)	1583.78	1587.85	1590.90	1589.14	1592.05
호 주 달 러 (AUD)	923.79	920.67	918.24	924.60	917.30
싱 가 폴 달 러 (SGD)	1095.04	1092.32	1094.60	1094.93	1087.9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30.99	330.48	331.40	331.65	329.55

#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 국세청, 2025. 4

- (신고 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총 5종\*)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명세서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업무가이드 맵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결산서류 공시등록 > 통합신고 작성

## 통합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하여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공익법인(①+②+③+⑤), 공익단체(①+②+④+⑤)

- (신고지원)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오류예방 시스템)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 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71종)

- (신고 도움자료)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27종)합니다.

**| 신고 도움자료 제공 주요 유형 |**

- **【위반행위 방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간 부당내부 거래,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취약 항목 집중 안내
- **【개정사항 안내】** 간편공시 대상 공익법인 미공시 가산세 부과, 중소 공익법인 주식공시 의무 신설 등 법령개정 내용으로 신고 전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 제공
- **【잘은실수 예방】** 출연재산 미보고, 설립 출연자 기재 누락, 전용계좌 미신고 등 세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신규 공익법인이 실수하기 쉬운 다양한 사례 제공

- (신고내용 확인)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교육 실시)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6회→10회)합니다.

- (AI 전화상담)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방법 : 국세상담센터(☎126) → 6번(공익법인 상담)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2024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1)」、「외부회계 감사보고서 2)」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 2)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
-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제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 공익을 위해 수입 사용,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등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수입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주요 신고의무 |

구 분	공익법인	공익단체
① 결산서류 공시	○	○
② 출연재산 보고	○	○
③ 의무이행 여부 보고	○	×
④ 수입명세서 제출	×	○
⑤ (간편공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	○	○

\*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 참고2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서식 변경)

□ (변경내용) 지출내역을 3가지(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혜인원(단체) 수」 기재 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 전 서식 >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⑤지출액
⑨ 합 계			



< 변경 후 서식 >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단체) 수	⑤지출액		
			명/개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⑨ 합 계						
나.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⑤지출액		
			개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개			
⑨ 합 계						
다.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⑤지출액		
			개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개			
⑨ 합 계						

**참고3**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서식 변경)**

□ (변경내용) 지출내역을 3가지(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혜인원(단체) 수」 기재 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 전 서식 >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⑳(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㉑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㉒지출목적	㉓지출액
㉔ 합 계			
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			
㉕(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㉖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㉗지출목적	㉘지출액
㉙ 합 계			

↓

< 변경 후 서식 >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 (단체) 수 명/개 명/개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나. 자산 취득에 지출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개 개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다. 운영경비에 지출 <span style="float: right;">(단위: 원)</span>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개 개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4.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운용소득 지출명세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지급처 수 명/개 명/개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 참고4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 ① [들어가기] 홈택스 } 세무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종합안내 } ①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 통합신고 작성하기
- ② [통합신고 작성하기] 01.기본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유형별로 신고의무가 있는 작성 서식이 왼쪽 메뉴에서 활성화되어 보여짐  
 ⇒ ①결산서류 등 공시, ②출연재산 보고서, ③의무이행보고, ④수입명세서(공익단체) ⑤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까지 한 번에 작성 가능  
 ※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 됨 (간편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함께 제출 필요)

## 참고5 AI 전화상담 서비스 도입

- (AI 전화상담) 공익법인 신고 기간,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24시간 언제 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연결해 드립니다.
- ① (국세상담센터 ☎126) 전문 상담사를 우선 연결하고 상담 대기인원이 초과할 경우 또는 야간·휴일에는 AI상담 연결(전화상담 중 '보이는 ARS' 이용 가능)

메뉴명	제공자료
(126→6→1) 자주묻는 Q&A	외부링크 문자전송
(126→6→2) 공익법인 홈택스 제출 안내	외부링크 문자전송
(126→6→3) 공익법인 관련 세법 상담	① 외부링크 문자전송(공익법인 종합안내) ② 전문 상담사 연결
(126→6→4) 기부금 관련 상담	① 외부링크 문자전송(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안내) ② 전문 상담사 연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상담) ③ 전문 상담사 연결(기부금 세법상담)

※ 상담 대기인원이 초과할 경우 AI상담사 연결

- ② (세무서 대표번호) 자주 묻고 간단한 문의는 AI가 우선 상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세무서 직원 연결(전화상담 중 '보이는 ARS' 이용 가능)

메뉴명		제공자료
① 자주묻는 Q&A	② 공익법인 홈택스 제출 안내	외부링크 문자전송 → AI상담사 연결
③ 공익법인 관련 세법상담	④ 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	
⑤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세무서 직원 연결

#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국세청, 202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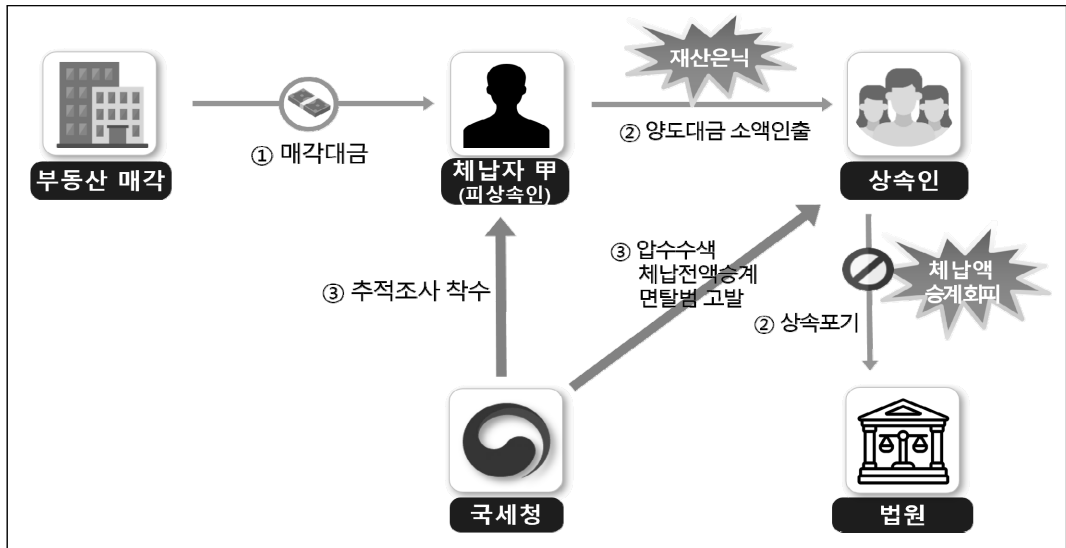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하였고
      - \* 연도별 추적조사 실적 : ('22) 2.5조원 → ('23) 2.8조원 → ('24) 2.8조원
    -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례1)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 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사례2) 중간배당으로 꺾이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사례3)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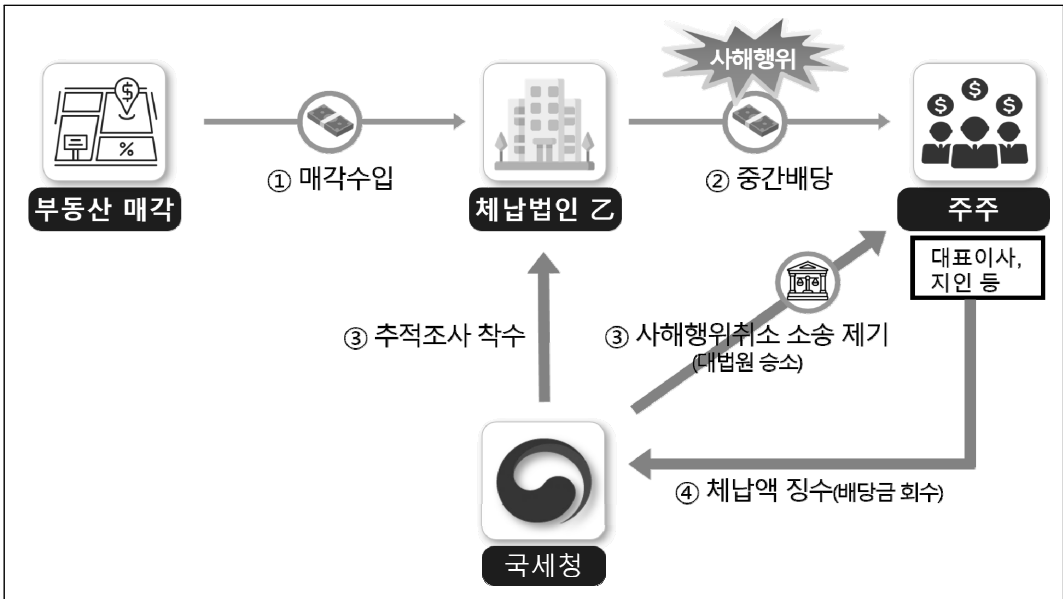
**붙임**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

**사례 1**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  
... 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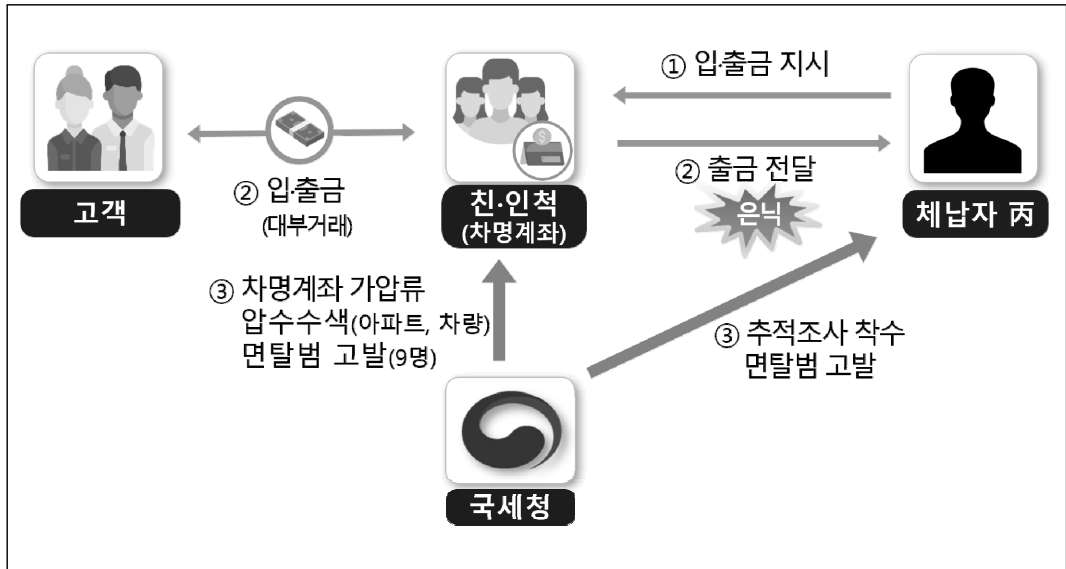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sup>1)</sup>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 1)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〇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였습니다.

**사례 2**    **중간배당으로 꺾대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sup>2)</sup>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여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데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
- 乙법인은 건물건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sup>3)</sup>하고 폐업하였습니다.
  - 3) 중간배당 :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주주에게 수시 배당  
 ↔ 정기배당 :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배당
-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체납액 ○ 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례 3**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으로 체납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명계좌 가압류 및 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객의 세금을 체납한 자로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먼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다수인 명의로 고객 입·출금되고 있어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 이에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원을 징수한 후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

- 국세청, 2025. 4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법인세법 §58①).

$$\text{▶ 재해상실비율} = \frac{\text{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text{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됩니다.
  -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구분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 = Min(①, ②)
① 세액공제액 = ㉠ + ㉡	㉠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 포함) ] × 재해상실비율
	㉡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가산세* -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 × 재해상실비율
② 공제한도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만 해당

□ (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신청·결과 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구분	제출 기한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	▶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사례**

□ 농업회사법인 ☆☆은 축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25기 (2025.1.1.~2025.12.31.) 사업연도 중에 산불로 인하여 공장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

생하였다.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관련 자료>

1. 화재발생일 : 2025.3.22.(특별재난지역 선포일)

2. 농업회사법인 ☆☆의 사업용 자산가액 변동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①)	화재로 인해 상실된 가액(②)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③=①-②)
건 물	20억원	10억원	10억원
토 지	30억원	-	30억원
기계장치	10억원	6억원	4억원
기타자산	5억원	5억원	-
합 계	65억원	21억원	44억원

3. 화재발생일 현재 농업회사법인 ☆☆☆의 제24기 사업연도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신고·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는 2억원이다.

4. 농업회사법인 ☆☆☆은 제23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3억원(가산세 5백만원 포함)을 고지받았으나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5. 농업회사법인 ☆☆☆의 제25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1억원이며, 이는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이 손금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제25기에 농업회사법인 ☆☆☆에 적용될 공제감면세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천만원분이며 가산세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분이다.(2026년 법인세 신고 시 신청)

○ 자산상실비율 : 60% ≥ 20%

$$(상실된 자산가액) \div (상실 전 자산총액) = 21억원 \div 35억원* = 60\%$$

\* 자산총액에서 토지는 제외됩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 3.3억원 [=Min(①+②+③, 21억원)]

① 제23기 체납된 법인세 : 3억원 × 60% = 1.8억원

② 제24기 법인세 : 2억원 × 60% = 1.2억원

③ 제25기 법인세(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

$$: (\text{산출세액} + \text{가산세} - \text{공제} - \text{감면세액}) \times \text{재해상실비율}$$

$$= (1억원 + 0원 - 0.5억원) \times 60\% = 0.3억원$$

\* 가산세는 ①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②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등 납부지연에 한합니다.

**참고 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4.3.14>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	-----	----------	----

신청인	① 본점 소재지	
	②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신청내용	
⑤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
⑥ 감면세액	법인세
⑦ 자산상실의 원인발생연월일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⑨ 상실된 자산가액	
⑩ 상실비율	$\% (100 \times \frac{\textcircled{9}}{\textcircled{8}})$
⑪ 감면신청이유	

「법인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